



제 439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사유의 추가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4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생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휴학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제23조의4(휴학)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에 비해 7.3시간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의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취업 및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

실제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가족돌봄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생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해당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휴학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학생이 학업과 돌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2023.4.26.

→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에 비해 7.3시간 더 길게 돌보고 있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음.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음.

-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등을 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²⁾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등 타 입법례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가족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한 휴학제도 도입 필요성은 이러한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 다만, 교육부는 자녀 돌봄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3호에 따른 육아휴학 제도를 통해 이미 보장되고 있으며,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실제 돌봄 주체가 누구인지, 다른 가족구성원의 돌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고, 대학별 심사기준 편차, 형식적 증빙 제출, 제도의 남용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돌봄휴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에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등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⁴⁾

개정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과 유사하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학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남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